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06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조인철·장종태·이건태

이개호 • 박용갑 • 주철현

이해민 • 정진욱 • 박해철

허성무・김 윤・박수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부 해외 서비스의 접속 장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가 지체되 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 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 용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04조).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손해배상)"을 "(손해배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원인, 대응조치 현황,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5 호를 삭제한다.

3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손해배상) ① (생 략)	제33조 <u>(손해배상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	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		
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	황,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		
<u>다.</u>	는 연락처 및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기		
	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		
	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		
	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104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4. ~ 7.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1. ~ 4의7. (생략)
-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 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아니한 자
- 6. ~ 17. (생 략)
- ⑥ (생략)

제공이 중	단된 /	사실과	손해배
상의 기준	• 절치	-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 4. ~ 7.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5

1. ~ 4의7. (현행과 같음) <u><삭 제></u>

- 6. ~ 17. (현행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